

樂浪郡의 民에 대하여

權 五 重*

I. 序 言

II. 郡民의 구성

1) 漢人系 郡民

2) 원주민

III. 民의 존재형태

IV. 結 語

I. 序 言

樂浪·眞番·臨屯·玄菟의 4郡은 漢武帝가 朝鮮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설치한 郡縣이었다. 이들 4郡이 설치된 시기는 동일하였으나¹⁾ 설치이후의 역사는 자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樂浪郡은 기원후 313년까지 420여년의 역사를 유지한 반면 眞番·臨屯郡은 설치후 불과 20여년만에 폐기되고 말았다. 그리고 玄菟郡은 樂浪郡이상의 수명을 누렸지만 治所를 3차례나 옮겨야만 하였고²⁾ 그 수명의 유지도 遼東郡의 부속적인 존재로서였다.

이렇듯 朝鮮지역에서 동시에 출발한 郡縣이 자기 다른 운명을 맞아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樂浪郡만이 唯獨 장소를 이전함이 없이 오랜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 같은 시기에, 朝鮮지역을 지

* 嶺南大 史學科 教授

1) 樂浪·眞番·臨屯의 3郡은 B.C. 108년, 玄菟郡은 그 이듬해인 B.C. 107년에 설치되었다.

2) 李丙巖, 玄菟郡考(韓國古代史研究 1976)에 의하면 玄菟郡의 治所는 通溝→興京부근→撫順방면으로 이전하였다.

배하겠다는 동일한 목적에서 설치된 郡縣인 관계로 이들 4郡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같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4郡이 차이를 보여야 했던 것은 郡의 내부적 구성의 차이때문이 아닐까 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郡民의 존재이다.

특히 樂浪郡民의 경우는 郡의 역사가 4세기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 운영도 玄菟郡처럼은 의존적이지 않았다는 점³⁾에서 우리의 관심을 모은다. 사실 樂浪郡은 오랜 수명을 누릴만한 객관적 여건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중국과의 거리를 보거나 주민의 성분을 보더라도 郡의 장기적 유지는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더우기 樂浪郡이 존속한 기간중 중국에서는 郡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王朝의 交替만도 다섯차례(前漢·新·後漢·魏·晉)나 있었으며, 公孫氏와 같은 지방세력이 皇帝의 樂浪郡에 대한 지배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여전속에서도 樂浪郡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郡民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樂浪郡의 운영상에 郡民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제까지의 연구는 樂浪郡民의 문제에 대해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그 근본 이유는 사료의 부족에 있겠지만, 제한적인 사료이나마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점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 考古學的인 자료를 활용한 三上次男의 연구가 樂浪郡民을 주제로 삼은 유일한 논문이지만,⁴⁾ 여기서는 樂浪郡 사회의 支配構成만을 논함으로서 우리의 관심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三上氏는 郡民가운데에 土着漢人豪族의 지배적 위치만을 강조함으로써 樂浪郡民에 관한 설명으로는 단순함마저 보이고 있다.

樂浪郡民에 대한 우리의 주된 관심은 다음과 같다. 樂浪郡民은 어떠한

3) 樂浪郡이 의존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玄菟郡과 비교하였을 경우이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樂浪郡은 그 운영에 있어 遼東郡·幽州刺史府·東夷校尉府 등 주변 官府에 의존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이 문제는 「樂浪郡과 그 주변의 官府」라는 제목으로 別稿에서 다루었음)

4) 三上次男, 樂浪郡社會の支配構造と土着民社會の狀態 (古代東北アジア史の研究 1966)

성분의 집단이었을까. 이들 집단이 郡縣내에서 담당할 역할은 무엇일까. 郡民의 성분과 역할은 樂浪郡의 역사와 어떻게 연관되었을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다음에서는 樂浪郡民의 구성과 民의 존재형태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Ⅱ. 郡民의 구성

樂浪郡民이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여 樂浪郡내에 거주하는 모든 人民을 가르킨다. 그런데 樂浪郡의 屬縣은 시간적으로 일정하지 않다. 正史 地理志의 내용에 의거하면 前漢代에는 25 縣, 後漢은 18 縣, 그리고 晋代에는 帶方郡의 7 縣을 포함하여 13 縣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屬縣의 수로 보건데 樂浪郡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위축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郡民 또한 시대적으로 그 대상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대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종족상으로도 樂浪郡民을 단일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樂浪郡은 異民族의 주거지에 설치된 郡縣이었으나 여기에는 적지 않은 수의 漢人系 주민이 거주함으로써, 樂浪郡民은 종족상 두 계통의 주민이 혼성된 집단이었다. 따라서 郡民의 실태와 역할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집단별로 분류하여 검토하는 것이 편리하리라고 본다. 이에 본 장에서는 漢人系 郡民과 原住民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1) 漢人系 郡民

樂浪郡 시대의 古墳과 遺物이 상징하듯이 樂浪郡내에는 적지 않은 수의 漢人系 주민이 거주하였다. 그 계통이 漢人이라는 점에서, 우선 이들이 樂浪郡에 도래하게 된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단 徙民의 가능성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자.

① (元朔 2年) 募民徙朔方十萬口(漢書⁵⁾ 6-170)

5) 본 논문에서 인용할 正史는 鼎文書局印行 正史全文標校讀本에 의함.

- ② (元狩 4年) 有司言關東貧民徙隴西·北地·西河·上郡·會稽凡七十二萬五千口 (同上書-178)
- ③ (元鼎 6年) 分武威·酒泉地置張掖·敦煌郡 徙民以實地(同上書-189)

기록 ①·②·③은 漢武帝期에 이루어진 徙民의 實例를 전하고 있다. 邊郡에 대한 徙民이 막대한 규모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徙民된 지역의 대개가 樂浪郡처럼 漢武帝期에 설치된 邊郡이라는 점⁶⁾에서, 또한 그 시기가 武帝期라는 점에서 樂浪郡에 대한 徙民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邊郡에 대한 徙民은 邊郡을 郡縣體制로 확고하게 지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郡縣의 성격과 상관지어 볼 수 있는 조치이다. 그러나 樂浪郡의 경우에는 徙民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徙民은 물론, 徙民을 示唆하는 屯田 설치의 예도 발견하기 어렵다.⁷⁾ 이로 미루어 樂浪郡에 대한 徙民과 屯田 설치의 가능성은 배제될 수 있다. 즉, 중국은 樂浪郡을 운영하기 위하여 國內의 漢人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다.

그러면 樂浪郡내의 漢人系 주민이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다음의 사료는 이에 대한 단서가 되고 있다.

漢武帝伐滅朝 分其地爲四郡 自是之後 胡漢稍別(三國志 30-848)

위의 사료에 보이는 「自是之後 胡漢稍別」이라는 내용은 郡縣 설치이전의 漢人의 존재를 示唆한다. 즉 이들은 郡縣 설치이전부터 이 지역의 원주민과 混居해오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郡縣 설치이전 漢人系 주민들의 규모가 어떠한지는 다음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陳勝等起 天下叛秦 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三國志 30-848)

6) 본문 사료 ①, ②, ③에 보이는 郡중에서 朔方·西河·武威·酒泉·張掖·敦煌 郡은 漢武帝期에 설치되었다.

7) 이에 반하여 玄菟郡의 경우에는 6부의 屯田이 설치되었다. 屯田의 설치연대는 後漢書 順帝紀(6-261)에 「陽嘉元年 (A.D.132) 復置玄菟郡屯田六部」라고 한 내용으로 미루어 132年 이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移住民의 숫자가 ‘數萬口’를 헤아릴 정도이고 보면 이들의 後裔 역시 樂浪郡내에서 하나의 集團을 형성할만한 규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樂浪郡民 가운데 漢人系 주민의 존재에 대하여는 周知되고 있는 터이지만 이들이 ‘漢人’이 아닌 ‘漢人系’였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樂浪郡에 관한 연구가 漢人系 주민을 漢人과 同一視하는 오류를 범하여 왔음을 숨길 수 없다.⁸⁾ 樂郎의 주민이 徙民된 漢人이 아니라 과거 朝鮮國시대부터 土着化하여 온 漢人系라는 사실은 郡의 성격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차이가 있다.

물론 樂浪郡民중에서 漢人の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地方官의 파전에 따른 그 附屬人들의 이주도 그러하지만 이 밖에도 여러 이유로 해서 樂浪郡에 도래한 漢人들이 있었다.

① 都邑頗放效吏及內郡賈人 往往以杯器食(漢書 28下—1658)

② (夏侯)豐·玄·緝·敎·賢等皆夷三族 其餘親屬徙樂浪(三國志 9—269)

③ (劉曜)弱冠游于洛陽 坐事當誅 亡匿朝鮮 遇赦而歸(晉書載記 3—2683)

즉, 상업적인 목적에서 內郡(中國本土)에서 도래한 賈人이 있었는가하면(사료 ①), 樂浪郡으로 流配된 漢人도 있었다(사료 ②). 또한 ③의 경우처럼 중국에서 죄를 지어 樂浪郡(朝鮮)으로 도피한 이들도 눈에 뜨인다. 이들이 樂浪郡에 거주하는 漢人들의 숫자를 불리었을 터이지만 그 규모는 보잘 것 없었을 것이다. 漢人系 주민의 대부분은 朝鮮國시대부터 이 지역에 정착하여 온 주민임이 분명하다.

이들이 어떠한 집단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樂浪郡 설치이전의 시기로 소급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앞서 樂浪郡의 설치배경이라는 題下の 논문에서 衛氏朝鮮의 國家的 성격을 논하면서 이들 漢人系 주민을 政治的 亡命集團으로 규정 한 바 있다.⁹⁾ 종족제통이 비록 漢人系라고는 하

8) 특히 三上次男의 前掲論文이 그 典型이라고 할만하다.

9) 拙稿, 樂浪郡의 設置背景(세종대학논문집 1984) pp. 205~207.

지만, 이들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不逞之民'이었고 朝鮮에 亡命한 이후에도 중국에 대해 계속하여 反目하였다. 漢人系 亡命人들의 이 같은 입장은 樂浪郡 설치이전 朝鮮과 漢의 관계가 惡化一路로 치닫는데 촉매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漢人系 주민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樂浪郡 설치이후 변화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위치는 중국에 불만을 가진 亡命人의 입장에서 중국 郡縣의 屬民으로 전환되어야만 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다음의 기록은 이들의 樂浪郡民으로의 變身이 용이하지 않았음을 示唆한다.

① 幾侯 張路…(元封)六年 侯張路使朝鮮謀反 死 國除(史記 20—1057)

② 灑清侯 參…天漢二年 坐置朝鮮亡虜 下獄病死(漢書 17—659)

위의 기록은 漢이 朝鮮을 攻滅하고 樂浪郡을 설치하는데 협력한 공로로 諸侯에 封해진 朝鮮의 옛 관료들에 관한 기록이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樂浪郡 설치직후 반란이 일어났으며, 이 반란에는 漢에 협조하여 封侯된 인물들까지 관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인물 모두를 漢人系로 볼 수는 없으나¹⁰⁾ 封侯된 인물들까지 반란에 가담한 것을 보면, 漢人系 이주민의 郡民으로의 전환 역시 용이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漢人系라고는 하더라도 이들을 '郡民'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기록을 보도록 하자.

(樂浪) 郡初取吏於遼東 吏見民無閉藏 及賈人往者夜則爲盜 俗稍益薄(漢書 28 下—1658)

위의 기록은 樂浪郡 설치 초기의 사정을 전하고 있다. 樂浪郡의 초기에

10) 사료②의 灑清侯 參에 대하여 李丙燕, 衛氏朝鮮興亡考(前掲書所收) p.81 에서는 朝鮮人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반하여 사료①의 張路은 「以朝鮮王子 漢兵圍朝鮮 降」(史記 20—1057)이라고 한 내용으로 미루어 漢人系임을 알 수 있다.

는 遼東에서 郡吏를 취하였던 것이다. 郡吏는 해당 郡의 郡民가운데에서 선발하는 것이 常例이다. 樂浪郡내에 수다한 漢人系 주민이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遼東郡人을 樂浪郡吏로 채용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漢人系 주민이 갖고 있던 亡命人으로서의 기질 그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저들을 郡民으로 수렴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하였으리라 본다.

그러나 樂浪郡의 屬吏를 遼東郡에서 취하는 조치가 長期化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은 郡의 설치 초기에 限하는 임시적인 조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인용한 사료중의 「郡初取吏於遼東」이라는 내용도 이를 示唆한다. 樂浪郡 설치 초기에 漢의 郡縣의 지배에 반감을 품고 있던 漢人系 移民들은 郡民으로 전환되어 갖고 郡의 屬吏職을 담당하였다. 다음의 기록은 이를 말하여 주고 있다.

王景字仲通 樂浪謂郡人也 八世祖仲 本琅邪不其人(中略)及濟北王興居反 欲委兵師仲 仲懼禍及 乃浮海東奔樂浪山中 因而家焉. 父宏 爲郡三老 更始敗 土人王調殺郡守劉憲 自稱大將軍·樂浪太守 建武六年 光武遣太守王遵擊之 至遼東 宏與郡決曹史楊邑等共殺調迎遵 皆封爲列侯 宏獨讓爵(後漢書 76-2464)

위의 기록은 後漢 明帝時 汴渠의 修造를 담당하였던 樂浪人 王景의 家系에 관한 기록이다. 그 내용을 보면 王景의 先祖 역시 정치적 이유로 말미암아 亡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王景의 家門은 中國系 樂浪人의 典型이라고 할만 하다. 그러던 것이 父親代에 오면 郡의 三老職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郡三老는 郡民의 教化를 임무로 하는 鄉官으로서 郡의 屬吏職과는 차이가 있다.¹¹⁾ 그렇더라도 郡三老가 郡縣體制에 협력하는 위치인 것 만은 분명하다. 그 家門의 郡縣體制에 대한 협조는 中國의 지배에 항거하는 王調를 제거하고 皇帝가 임명한 樂浪太守를 맞이하였다는 사실로써 재삼 확인되어진다. 郡의 屬吏職 또한 王景의 家系와 같은 漢人

11) 嚴耕望, 中國地方行政制度史 卷上, 1974, pp. 246~247.

系 주민에 의해 점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기록에 보이는 決曹史楊邑이라는 郡吏는 바로 그러한 존재일 것으로 짐작된다.¹²⁾

漢人系 주민이 亡命人의 후예이면서도 郡吏職을 점유하는 등 樂浪郡의 지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근본이유는 중국의 種族差別政策에 있을 것이다. 주민의 種族系統에 따른 차별은 앞서 인용한,

漢武帝伐滅朝鮮 分其地爲四郡 自是之後 胡漢稍別

이라는 사료의 내용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종족계통에 따른 차별은 단순한 구분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郡民의 자격문제로까지 연결되었는 듯 하다. '民'의 일반적 개념은 皇帝의 지배대상인 人民 모두를 뜻하는 것이지만 樂浪郡의 경우에는 주민 모두를 '民'으로서 대우하지는 않았다.

桓靈之末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三國志 30-851)

위의 기록은 樂浪郡으로부터 帶方郡이 分置된 사정을 전하는 내용으로서 '民'에 관한 기록이 주목된다. 위의 기록중 필자가 句讀點으로 표시한 '民'·'遺民'·'舊民'은 동일한 대상임이 분명하다. 民을 「收集」하고 民이 「稍出」하였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民'을 樂浪郡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로서 이해할 수 없다. 樂浪郡의 疆域안에는 수다한 韓 그리고 濊가 거주하였을 터인데도 위의 사료에 보이는 '民'은 韓·濊와 구분되는 존재로서 쓰이고 있다. 이것은 韓·濊系의 주민에게 '民'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樂浪郡의 民은 漢人系 주민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음과 같이 이를 反證하는 사료도 보인다.

12) 樂浪古墳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하여 볼 때 漢人系 주민이 郡吏職을 담당한 예는 더욱 폭 넓게 확인될 수 있다. 가령 王光墓에서 발견된 「樂浪太守掾王光之印」이나 王旰墓에서 출토된 「五官掾王旰印」이 그러하다. (印章의 내용은 梅元末治·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 第3卷 1959, p. 13에 의함)

自單單大山嶺以西屬樂浪 自嶺以東七縣 郡尉主之 皆以濊爲民(三國志 30-848)

즉, 濊系의 원주민을 '民'으로 하였다는 내용이 그러하다. 위의 기록은 漢人系 주민만이 아니라 원주민에게까지 '民'의 자격이 부여되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위의 사료내용을 樂浪郡 전체의 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원주민을 '民'으로 삼은 조치가 일부의 縣에서만 시행된 때문이다. 또한 위의 조치는 7縣지역이 部都尉體制로 전환된 이후에 맞게된 변화로도 이해되는 때문이다.¹³⁾ 아마도 이것은 漢人系 주민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부득이한 조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蠻夷와 구분되는 漢人系만을 '民'으로 하여 통치에 임하였다. 다른 邊郡의 경우 역시 그러하다.

- ① (永昌郡) 哀牢三千餘人攻博南 燔燒民舍 肅宗募發越巂·益州·永昌夷漢九千人討之(後漢書 86-2851)
- ② (日南郡) 桓帝永壽三年 居風令貪暴無度 縣人朱達等及蠻夷相聚 攻殺縣令(同上書-2839)

위의 사료에 보이는 永昌郡·日南郡은 樂浪郡처럼 異民族 거주지에 설치된 郡으로서, 永昌郡은 西南夷지역에 日南郡은 南蠻의 지역에 설치되었다. 기록①에 보이는 哀牢夷의 반란에서는 民舍를 공격·소각하였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官舍가 아닌 民舍까지 공격하였던 것은 '民'이 저들 원주민(哀牢)과 구분되는 존재인 때문일 것이다. ②의 기록에 보이는 '縣人'이라는 내용 역시 그러하다. 縣人 또한 民과 마찬가지로 蠻夷와 구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蠻夷와 구분된다는 점에서 邊郡에서의 '民' '縣人'같은 자격은 종족상으로 漢人系의 주민에게만 주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他郡의 例로 보건데 樂浪郡에서 民의 위치를 漢人系 주민에게만 제한

13) 部都尉體制는 郡縣體制보다 주민에 대한 속박을 완화하는 조치로 이해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別稿를 기약한다.

한 조치는 중국의 기본 입장이었음이 분명하다.

민의 자격을 漢人으로부터만 제한한 조치로 말미암아 邊郡내에서의 民은 자연 회소한 존재였을 것이다. 徙民이 실시되지 않은 邊郡의 경우는 그 형편이 더욱 심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樂浪郡의 경우는 달랐다. 徙民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많은 漢人系 주민이 존재하므로 해서 民의 확보와 운영에 이렇다 할만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더우기 이들 樂浪郡의 民은 郡縣 설치이전부터 土着化되다시피한 주민이었던 까닭에 郡의 운영이나 異民族과 관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한다.

樂浪郡과 객관적 여건을 같이 하는 郡縣이면서도 眞番·臨屯郡이 일찌기 폐기되고¹⁴⁾ 玄菟郡이 본래의 장소를 옮겨야 했던 주요한 이유도 바로 民의 문제에 있지 않을까 한다. 이들 郡의 폐기 및 이동 원인에 대하여는 원주민의 저항이라는 사실이 지적되는 터이지만,¹⁵⁾ 民의 확보가 여의치 않았으리라는 점 또한 주목되어 마땅하다. 樂浪郡을 제외한 나머지 郡에 民으로 활용할만한 주민이 적었음은 漢式古墳의 분포상황으로 알 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民의 존재를 전하는 古墳의 분포는 樂浪郡이 위치한 大同江口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¹⁶⁾ 이로서 漢人系人들은 樂浪郡지역에 편중되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漢人系 주민 즉, 民의 거주분포는 郡의 역사와 상관지어졌음이 분명하다. 中國이 民을 漢人系 주민으로부터만 제한한 조치는 郡의 운영을 強建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겠지만 오히려 그 조치가 郡의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음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樂浪郡의 경우는 郡 설치이전부터 土着化한 다수의 漢人系 주민을 郡民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樂浪郡은 朝鮮지역의 어떠한 郡 보다는 건

14) 眞番·臨屯郡이 파기된 것은 昭帝 始元 5年(B.C.82)의 일이었다. (漢書 7-23, 後漢書 85-2817)

15)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1959, pp.167-168.

16) 金元龍, 三國時代의 開始에 關한 一考察(東亞文化 7 1967) pp.4~7.

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郡民의 적극적인 활용은 郡縣體制를 보조하는 郡吏로의 발탁에 있을 것이다. 郡의 民을 漢人系 주민으로만 제한한 사실로 미루어 적어도 郡吏職은 이들에 의해 독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樂浪郡은 郡吏職을 독점하는 漢人系 주민을 지배층으로 하면서 운영되었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할 것은 漢人系 주민이 지배층이었다는 주장이 상대적인 표현이라는 점이다. 樂浪郡내의 지배층이었다는 것이지 중국사회의 지배층이었다는 설명은 아니다. 그러면 중국사회에서 이들의 위치는 어떠하였는지, 이 문제는 다음 章에서 民의 존재형태를 검토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자.

2) 원주민

앞의 節에서는 樂浪郡民가운데 漢人系 주민에 관해 검토하였다. 이제 樂浪郡民으로서 또 다른 하나의 部類인 원주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앞에서의 검토를 통하여 郡民의 자격은 원칙상 漢人系 주민에게만 부여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원주민은 郡民의 위치에서 제외되는 존재이었음이 분명하다. 民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원주민은 皇帝統治圈밖의 존재이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자.

(和帝)時大郡口五六十萬舉孝廉二人 小郡口二十萬并有蠻夷者亦舉二人 帝以爲不均下公卿會議 鴻與司空劉方上言 凡口率之科 宜有階品 蠻夷錯雜 不得爲數(中略) 帝從之(後漢書 37-1268)

위의 내용은 孝廉의 薦舉기준을 논한 것으로서 여기서도 중국 郡縣내에 거주하는 異民族에 대한 차별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孝廉의 정원을 각 郡의 인구에 비례하면서 蠻夷의 수는 계산에서 제외시켰던 것이다. 그렇지만 蠻夷 역시 郡의 인구로는 파악되고 있다. 그러니까 漢書 地理志에서와 같이 樂浪郡의 인구로 제시된 ‘口四十萬六千七百四十八’이라는 數値는

원주민의 인구까지 포함된 숫자인 것이다. 원주민의 인구가 파악되었다함은 이들이 皇帝의 통치대상이었음을 示唆한다. 비록 民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주민의 動態는 皇帝에 의해 파악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樂浪郡의 원주민들은 樂浪郡 외곽에 거주하는 異民族과는 구분되는 존재이다. 郡밖의 異民族들은 ‘外夷’로서 불리었는데, 이 점은

樂浪外夷韓·濊貊各率其屬 來朝貢(三國志 4 陳留王紀-148)

이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樂浪郡의 원주민들은 ‘內夷’라고 부를만 하다. 위의 사료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郡밖의 外夷들은 朝貢·內屬 등의 행위를 통해 郡과 접촉하였음에 반하여 內夷의 경우는 차이가 있다. 樂浪의 원주민에게 民의 자격이 부여되지 못했지만 郡內에 거주하므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의무를 부담해야만 하였다.

그러면 원주민들이 부담한 의무는 어떠한 내용이었을까. 樂浪郡에 관한 직접적인 사료는 없으나 樂浪郡과 유사한 他邊郡의 예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示唆는 가능하다. 우선 軍事面을 보도록 하자.

① 零陵蠻羊孫·陳湯等千餘人 著赤牘 稱將軍 燒官寺 抄掠百姓 州郡募善蠻討平之(後漢書 86-2833)

② 遣武威將軍劉尚等發廣漢·犍爲·蜀郡人及朱提夷 合萬三千人擊之(同上書-2846)

기록①은 武陵郡 ②는 益州郡에 관한 기사로서 이들 郡 역시 漢武帝時 西南夷의 지역에 설치한 郡縣이었다. 기록①·②에 보이는 ‘善蠻’ ‘朱提夷’는 郡內에 거주하는 원주민으로서 郡의 軍役に 모집·징발되고 있다. 위의 사료의에도 邊郡에서의 軍役に 원주민을 징발하는 事例가 빈번하였음을 볼 때,¹⁷⁾ 樂浪郡의 원주민 역시 징발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짐작하건대 樂浪郡이 보유한 兵士가운데에는 원주민의 수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즉 郡內의 원주민들은 外夷와는 달리 郡이 부과하는 軍役을 담당

17) 본문의 사료의에도 漢書 99 中-4130, 後漢書 86-2832·2851, 三國志 30-844 등의 내용으로 확인된다.

해야만 하였다고 본다.

다른 한가지 원주민이 부담해야만 하였던 것은 租賦일 것이다.

- ① 珠崖太守會稽孫率調廣幅布獻之 蠻不堪役 遂攻郡殺幸(後漢書 86—2836)
 ② 永昌太守純與哀牢夷人約 邑豪歲輸布貫頭衣二領 鹽二斛 以爲常賦 夷俗安之(同上書—2851)

사료①은 南蠻지역에 설치된 珠崖郡에 관한 기록이며, ②는 西南夷지역에 설치된 永昌郡에 관한 기사이다. 이들 邊郡 모두 郡의 원주민들에 대해 調賦를 부과하고 있다. 위의 예로 보건데 樂浪郡의 원주민 역시 郡에 대해 租賦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이 납부한 租賦의 量은 漢人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다.¹⁸⁾ 또한 사료②에서와 같이 租賦의 내용이 郡과 원주민간의 '約'에 의해 결정됨을 보면 원주민에 대한 課稅가 신중하게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租賦는 원주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後漢書 南蠻·西南夷傳의 내용이 租賦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난 원주민의 반란기사로 얼룩져 있음은 이를 말하여주고 있다. 물론 이들의 반란이 있기에는 郡吏의 중간적 착취가 눈에 띄지만¹⁹⁾ 郡의 租賦자체도 원주민에게 부담이 되었으리라고 본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樂浪郡의 원주민들은 郡에 대해 軍役이나 租賦의 부담을 짊어져야만 하였다. 樂浪郡의 외곽에 위치한 外夷도 이들 內夷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樂浪郡에서 軍征·賦調가 있을 때에 役使를 공급한 不耐徵의 경우가 그러하다.²⁰⁾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郡내의 원주민이 부담했던 것처럼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같은 부담에 항거한 樂浪 원주민의 반란도 짐작되는 바이지만

18) 원주민의 租賦가 漢人의 그것과 비교하여 차이 있었음은 武陵郡의 예를 통하여 示唆받을 수 있다. 즉, 「武陵太守上書 以蠻夷率服 可比漢人 增其租賦」라는 내용이 그러하다. 이점에 대하여는 金翰奎, 古代中國의 世界秩序研究 1982, p. 278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9) 漢書 28下—1670, 後漢書 86—2833·2835·2841·2843, 87—2878

20) 三國志 30—849.

이러한 경우에는 군사적 재제는 물론 관련자들을 奴隸化하는 등²¹⁾ 심한 보복이 따랐을 것이다.

그러면 樂浪郡의 원주민들은 郡民에서 제외되고, 軍役과 租賦를 담당하는 등 철저한 被支配層으로만 一貫되었을까. 위에서 살핀 내용들은 한결 같이 원주민에 대한 착취의 實例로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원주민에 대한 차별과 착취만으로 樂浪郡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三上次男은 樂浪郡 사회의 지배구조를 논하면서 이점을 강조하였으나, 이 같은 견해는 樂浪의 外形이 中國 郡縣이라는 점만을 중시한 단순논리이다. 樂浪郡의 구조를 면밀히 조사해 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樂浪郡내에 거주한 渠帥의 존재이다. 중국은 樂浪郡을 설치한 이후에도 이 지역 원주민들이 유지하여 온 사회형태를 말살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점은 원주민 사회의 首長격인 渠帥의 존재가 여전히 확인되어진다는 사실로 示唆된다.

沃沮還屬樂浪 漢以土地廣遠 在單單大領之東 分置東郡都尉 治不耐城 別主領東七縣 時沃沮亦皆爲縣 漢建武六年 省邊郡都尉 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中略) 沃沮諸邑落渠帥皆自稱三老 則故縣國之制也(三國志 30-846)

위의 기록은 樂浪郡의 屬縣이었다가 분리된 嶺東濊에 관한 기록이다. 위의 기록은 樂浪郡의 시대적 推移를 살필 수 있는 값진 자료이다. 그 내용을 보전해 嶺東濊에 대한 중국의 지배가 郡체제로부터 都尉체제 그리고 縣國체제로 전환되었음을 볼 수 있다. 縣國체제는 사실상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데 이 시기 渠帥의 존재가 주목된다. 渠帥가 확인되는 시기가 비록 縣國시대이기는 하나 이들을 縣侯로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존재가 郡縣체제속에서도 溫存될 수 있었던 때문일 것

21) 西北邊郡의 하나인 安定郡의 例를 볼 것 같으면 郡內 羌族의 반란이 있을 경우 이를 진압하면서 관련자들을 奴婢로 沒入하였다(後漢書 87-2885)

이다.

중국이 異民族에 대해 郡縣制를 적용하면서도 渠帥와 같은 원주민 首長의 존재를 묵인하였음은 他郡의 예를 통하여도 확인된다.

秦惠王并巴中 以巴氏爲蠻夷君長 世尚秦女 其民爵比不更 有罪得以爵除 其君長歲出賦二千一十六錢 三歲一出義賦千八百錢 其民戶出櫛布八丈二尺 雜羽三十緡 漢興南郡太守斬彊請一依秦時故事(後漢書 86—2840)

위의 사료는 秦惠王時(255—250B.C.) 異民族지역에 설치된 南郡에 관한 기록이다. 郡縣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蠻夷 君長의 존재는 계속하여 보존되고 있다. 秦의 故事에 의거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漢代의 南郡에는 蠻夷 君長이 계속하여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君長의 지위가 郡縣 설치이전과는 달리 歲賦를 부담해야 하는 위치로 전락하였지만 君長의 존재는 郡縣體制속에서도 유지되었던 것이다.

郡縣制속에서 확인되는 渠帥·君長의 존재는 이들 개인의 존재만을 뜻하는 내용일 수 없다. 渠帥·君長의 존재는 이들을 首長으로 삼는 원주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음을 示唆한다. 渠帥의 과거 형태는 國 또는 邑의 首長이었을 것인 바, 渠帥의 존재는 종래의 國邑秩序가 郡縣체제내에서도 존속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준다. 즉 樂浪郡내에는 원주민을 중심으로 한 國邑秩序가 여전히 존재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實例로서 1913년 平南龍岡郡龍井里에서 발견된 「粘蟬神祠碑」 중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목된다.

(元) (和) (二) 年 四月 戊午 粘蟬長 渠 (淳) (興)
 年 四月 戊午 粘蟬長 渠 F (제 1행)

(議)
 建 丞 屬 國 會 爲 樂 修 粘 (제 2행)

위의 기록은 7행의 碑文중 1행과 2행만을 적은 것이다.²²⁾ 여기에서

22) 碑文의 내용은 李丙巖, 樂浪郡考(前掲書所收) p.147에 기재된 碑文의 일부를 轉載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제 2행의 내용이다. 그 내용은 「□建丞 屬國會議 爲衆修粘」으로 읽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屬國會議」의 ‘屬國’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屬國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異民族에 대한 지배를 위해 설치된 郡과 유사한 행정단위를 의미한다. 後漢書 郡國志에 의거하면 幽州에 遼東屬國, 益州에 廣漢屬國·蜀郡屬國·犍爲屬國, 涼州에 張掖屬國·張掖居延屬國이 설치되었다. 이들 屬國에는 郡守에 준하는 屬國都尉가 파견되었다.²³⁾ 이와 같은 屬國의 일반의미로 보건대 碑文에 보이는 ‘屬國’의 의미는 다른 뜻으로 이해함이 좋을 듯 하다. ‘屬國’의 字意 그대로 粘蟬縣에 ‘소속된 國’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樂浪郡의 중심부——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漢人系 주민이 거주하였을 터인데도——에 위치한 粘蟬縣의 경우에도 원주민의 國邑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 樂浪郡내에는 상당수의 國邑이 존속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²⁴⁾ 즉 樂浪의 원주민들은 郡縣에 소속된 주민이면서 한편으로는 土着的 國邑의 구성원이었던 것이다. 國邑의 유지는 중국측의 任意的인 조치로서 異民族 支配方式이라고 할 수 있다. 異民族에게 羈縻한다는 재래적인 입장이 郡縣體制내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國邑이 유지됨으로 인해 원주민 사회는 어느 정도의 自律性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郡縣體制에 들기는 하였어도 자신들의 國邑을 유지하는 원주민의 위치를 단순하게 피지배층·착취의 대상으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 樂浪郡이 異民族 주거지에 설치된 郡縣임을 상기할 때, 國邑體制的 유지는 一面 樂浪郡이 오래 역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도 생각된다.

분만 아니라 원주민들은 郡縣體制에도 직접 관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주민은 郡民의 자격에서 제외되고 郡吏職 역시 漢人系주민에

23) 後漢書志 28—3621.

24) 樂浪郡의 體裁는 중국적 郡縣體制와 토착적 國邑秩序가 병존된 郡으로서의 특이한 형태이다. 이같은 체제는 樂浪郡만이 아니라 異民族을 원주민으로 하는 南蠻·西南夷지역 諸郡에서도 확인된다. 樂浪郡의 체재에 대하여는 別稿에서 詳論될 것이다.

의해 독립되었지만 郡府에서 멀리 떨어진 縣의 경우 역시 그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의 기록을 보도록 하자.

漢建武六年 省邊郡都尉 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 夷狄更相攻伐 唯不耐濊侯至今猶置功曹·主簿諸曹 皆濊民作之(三國志 30-846)

위의 기록은 後漢初年(A.D. 30)까지 樂浪郡과 樂浪東部都尉에 의해 관할되어 오던 嶺東七縣에 관한 기록이다. 이들 7縣은 樂浪郡府와 멀리 떨어진 지역인 만큼 시대에 따른 변화도 심하였다. 그 본래는 玄菟郡의 소속이었고 玄菟郡의 이진후에는 樂浪郡에 속하였다. 그러나 곧 郡에서 분리되어 部都尉의 관할을 받아오다가 後漢初에는 侯國 체제로 전환되었다. 위의 기록은 侯國時代, 즉 郡縣體制로부터 해방된 이후의 사정을 전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不耐濊가 功曹·主簿의 諸曹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功曹·主簿등의 諸曹는 원래 郡 또는 縣의 屬吏職이다.²⁵⁾ 때문에 위에 보이는 不耐濊(建武 6年 이후)를 郡縣體制的 연장으로 이해한 견해도 있다.²⁶⁾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功曹·主簿의 원형이 郡·縣의 屬吏이기는 하지만, 不耐濊가 「至今猶置」하였다는 功曹와 主簿는 郡縣의 屬吏로 이해될 수 없다. 郡縣이 아닌 侯國의 상태에서 郡縣의 屬吏가 존재할리 만무한 까닭이다. 또한 不耐濊侯가 功曹·主簿를 存置시켰다는 사료 내용도 이들이 郡縣의 屬吏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하다. 위에 보이는 功曹와 主簿는 그 명칭이 같다고 하더라도 屬吏가 아닌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不耐濊의 官名으로 이해된다.

중국이 郡縣체제를 통하여 移植한 屬吏制가 원주민 사회에서는 하나의 정식 官職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樂浪郡 등의 중국 郡縣이 원주민 사회에 끼친 官制상의 영향이라고 할만 하다. 다음에 보이는 '三老'의 경우 역시 郡縣의 영향이 뚜렷하다.

25) 嚴耕望, 前揭書 pp. 124~125 및 p. 226 참조.

26) 金翰奎, 前揭書 pp. 361~362.

(濊) 無大君長 自漢已來 其官有侯·邑君·三老(三國志 30—848)

三老職의 본래 형태가 郡縣制하의 鄉官임은 앞에서 언급하였다.²⁷⁾ 鄉官의 의미인 三老가 濊의 경우에는 정식 官職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郡縣의 屬吏나 鄉官이 전도되어 원주민사회에서 官職으로 수용된 예는 樂浪郡을 떠나서도 확인된다.

其國有王 其官有相加·對盧·沛者·古鄒加·主簿·優台·丞·使者·阜衣·先人尊
卑各有等級(三國志 30—843)

위의 기록은 三國志에 소개된 高句麗의 관직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主簿의 존재이다.²⁸⁾ 高句麗의 主簿라는 관직 역시 不耐濊의 경우처럼 郡縣의 屬吏職이 변형되어 수용된 예로서 이해된다.²⁹⁾ 그 이유는 高句麗가 한때 玄菟郡의 屬縣의 상태에서 분리·독립된 이후에도 玄菟郡의 관할을 받는 대상이었던 때문이다.³⁰⁾

그러면 郡縣의 屬吏職이 濊와 高句麗에서 정식 官職으로서 그 위치를 굳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모방이었을까. 중국제도의 모방이라고 한다면 본래의 屬吏制를 官制로서 수용하였다는 사실이 이상스럽

27) 鄉官은 祿秩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정식 官職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28) 主簿의 '丞'이라는 관직 역시 後漢書 百官志의 「四夷國王·率中王·歸義侯·邑君·邑長皆有丞 比郡縣」(後漢書志 28—3632)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중국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관직으로 이해된다.

29) 主簿가 南北朝時代에 이르면 幕府의 官屬으로 보편화되었음을 볼 때, 高句麗의 主簿職이 幕府 官屬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南北朝時代 高句麗의 위치는 '開府僕同三司'라는 官號가 示唆하듯이 중국측에 의해 하나의 幕府로서 간주되는 때문이다. 그러나 三國志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바처럼 主簿의 존재가 魏代에는 이미 高句麗의 관직으로 소개되고 있음을 볼 때 '幕府官屬'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30) 高句麗가 한때 玄菟郡의 屬縣이었으며, 屬縣의 상태를 이탈한 이후에도 玄菟郡의 관리대상이었음은 「武帝滅朝鮮 以高句麗爲縣 使屬玄菟」(後漢書 85—2813), 「(高句麗)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三國志 30—) 등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다. 모방일 경우 중국의 정식 官名에 대신하여 屬吏의 명칭을 官名으로 취할리 만무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濊·高句麗가 취한 主簿·功曹·三老의 官名은 중국이 원주민 사회에 실시한 郡縣制의 殘影으로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濊와 高句麗에 보이는 主簿 등의 官名은 원주민의 屬吏職 참여를 示唆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濊와 高句麗는 一時나마 樂浪郡과 玄菟郡의 屬縣의 상태에 있었다. 屬縣의 상태에서 이들 원주민은 縣吏나 三老의 職을 점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郡의 屬吏나 三老職이 漢人系 주민에 의해 독점되었지만, 郡府와 거리가 있는 縣에서는 원주민이 屬吏나 三老職을 점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 節에서 인용한 部都尉에 관한

單單大山領以西屬樂浪 自領以東七縣 都尉主之 皆以濊爲民

이라는 내용은 이를 示唆한다. 필자가 句讀點한 「皆以濊爲民」이라는 내용은 部都尉 지배하에 있는 縣의 屬吏가 濊民에 의해 충당되었음을 가르킨다. 「濊爲民」의 현상은 위의 7縣이 部都尉의 管轄로 편제되면서 맞게된 변화이겠지만, 원주민의 縣吏職 참여를 部都尉체제로서만 한정지을 수는 없다. 위에서 살핀 高句麗의 경우도 그렇지만 他 지역에서도 이러한 實例는 확인된다.

王莽時郡守枚根調邛人長貴 以爲軍侯 更始二年 長貴率種人攻枚根 自立爲邛毅王 領太守事 又降於公孫述 述敗 光武封長貴爲邛毅王 建武十四年 長貴遣使上三年計 天子即授越嶲太守印綬(後漢書 76-2853)

위의 기록은 西南夷지역에 설치된 越嶲郡의 원주민인 長貴에 관한 기록이다. 그 위치가 원주민이면서 '軍侯'라는 屬吏로 발탁되었고, 끝내는 郡太守의 職까지 享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例로 미루어 縣의 屬吏職은 部都尉체제가 아니더라도 樂浪郡내의 원주민들에게 제공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樂浪郡內 모든 縣의 屬吏職이 원주민에게 개방되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胡·漢의 차별로 보건데, 원주민의 縣吏職 任用은 漢人系

주민을 屬吏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번두리 縣에서 취한 응급적인 조치일 것으로 생각된다.

원주민의 縣吏職 참여는 樂浪郡의 원주민 사회에 대한 의존을 나타낸다. 樂浪郡은 원주민의 國邑秩序를 溫存시키고 아울러 원주민을 郡縣體制 내에서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樂浪郡의 원주민 사회에 대한 적응이자 타협임이 분명하다. 적응과 타협은 樂浪郡을 郡縣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번질토록 하였을 것이나 반면 樂浪郡으로 하여금 오랜 역사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적응과 타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樂浪郡의 '民'으로서 土着化되어있던 漢人系 주민의 역할이 컸으리라는 점은 看過될 수 없을 것이다.

Ⅲ. 民의 존재형태

앞에서는 樂浪郡民을 구성하고 있는 漢人系 주민과 원주민에 대해 각기 검토하였다. 두 계통의 주민 모두 樂浪郡의 운영에 一翼을 담당하였지만 특히 漢人系 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郡은 漢人系 주민만을 民으로 대우하였고 이들에 의해 郡吏職은 점유되었던 것이다. 樂浪郡은 자연 이들 民에 의해 좌우되었을 것인 바, 郡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民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民의 존재형태로서는 우선 저들이 樂浪郡의 지배층이었다는 사실이 돋보인다. 저들의 지배적 위치는 郡의 屬吏職단으로 국한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樂浪郡의 地方官職마저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61년 平壤市貞柏里에서 발견된 木槨墳——이른바 高常賢墓는 이를 입증한다.³¹⁾ 여기서는 「夫租長印」, 「高常賢印」이라고 새겨진 두개의 銀印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의해 高常賢은 夫租縣長을 역임한 인물로 추단되고 있다.³²⁾ 또

31) 高常賢墓에 관하여는 岡崎敬, 夫租藏君銀印をめぐる諸問題(朝鮮學報 46 1968) 및 町田章, 樂浪前漢墓に關する一視角(朝鮮史研究會論文集 18 1981) 참조.

32) 岡崎敬, 前掲論文 p. 49.

한 그 出身도, 墓의 소재지나 細形銅劍 등의 副葬品으로 인해 樂浪 현지 주민일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³³⁾ 그는 樂浪의 주민가운데에서도 民의 자격이 부여된 漢人系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다.³⁴⁾

여기에서 잠시 주목하고 싶은 것은 夫租縣長이라는 地方官職이 本郡出身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高常賢墓의 연대는 유물로 볼때 前漢末에서 後漢初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한다.³⁵⁾ 이 시기의 지방관에게는 廻避制가 적용되었으며, 縣長의 경우 本縣出身은 물론 本郡出身까지도 廻避되었던 것이다.³⁶⁾ 그러면 樂浪郡에서 廻避制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때문일까, 그 이유로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봄직하다. 즉 당시는 前漢末~後漢初의 혼란기로서 政局의 혼란때문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현지의 주민으로 그 역할을 대행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내용은 樂浪郡에서 廻避制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이유가 시대적 혼란만은 아니었음을 示唆한다.

(寶憲) 察駟高第 出爲長岑長 駟自以遠去 不得意 遂不之官而歸(後漢書 52—1722)

위의 시기는 後漢 和帝初期(89—92)³⁷⁾에 해당하는 바, 樂浪郡의 長岑縣長職이 遠去를 이유로 해서 거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他郡(涿郡)출신

33) 同上

34) 高常賢이 漢人系 주민이었음은 i) 木槨墳이라는 墓制 ii) 黑漆蓋 등의 유물 iii) 縣長이라는 지위 등의 사실을 종합할 때에 알 수 있다. 細形銅劍이 원주민系的 유물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漢人系 주민의 土着化——원주민문화로부터의 영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5) 町田章, 前掲論文 pp. 99~100에서는 高常賢墓의 上限年代를 黑漆蓋樫에 쓰여진 「永始三年十二月右鄭作」이라는 내용에 의거 기원전 14년으로 보았다. 下限年代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夫租長印」이라는 印章에 의거 기원후 30년 무렵으로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夫租長'이라는 地方官의 존재는 建武 6年(A.D. 30) 夫租縣이 廢置됨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는 까닭이다. 이로써 高常賢墓는 前漢末에서 後漢初의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6) 濱口重國, 漢代に於ける地方官の任用と本籍地との關係(秦漢隋唐史の研究 1980 復刊版) pp. 794~797.

37) 和帝初期의 연대는 後漢書 23(寶憲傳)—815 및 同 52(崔駟傳)—1722의 내용에 의함.

으로 峇縣長에 임명하였으나 당사자가 부임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이 경우 역시 縣長의 역할은 樂浪郡民에 의해 대행되어야만 하였을 터이고, 결과적으로는 廻避制의 원칙에 어긋난 事例가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廻避制의 適用如否는 시대상만이 아니라 郡縣의 형세와도 상관된다고 할 수 있다. 廻避制가 적용되지 못한 郡縣이라면 그 郡縣은 그만큼 劣弱한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樂浪郡의 縣長職이 樂浪郡民에 의해 수행되어야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으리라고 본다.

이상에서 주목한 夫租縣長 高常賢의 例는 樂浪내에서 民의 지배적 위치를 제삼 확인시켜준다. 郡의 운영상 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漢人系 주민, 즉 民의 정치적·사회적 지위는 확고한 듯이 보인다. 이로 인하여 이들은 ‘豪族’이자 ‘支配層’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이 民의 위치를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은 樂浪郡이라는 좁은 공간으로 한정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한 표현이다. 이들 民은 樂浪郡의 주민인 동시에 皇帝의 지배체제에 소속된 一分子였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視野를 넓힐 필요가 있다. 전체 중국사회에서 樂浪郡民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사항은 樂浪郡이 外郡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異民族의 거주여부에 따라 ‘外郡’과 ‘內郡’으로 구분하였는데, 外郡은 異民族의 거주지역이었던 관제로 차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통치체제의 운용과정에서도 소외되었다.³⁸⁾ 樂浪郡역시 소외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우선 소외의 實例를 보도록 하자.

① (宣帝本始元年) 詔內郡國舉文學高第各一人(漢書 8-241)

② (地節三年) 令內郡國舉賢良方正可親民者(同上書-249)

사료①과 ②는 漢의 관리선발이 어떠한 요령에 의하여졌는지를 나타내고

38) 金翰奎, 前掲書 pp. 159-162.

있다. 文學高第나 賢良方正에 의한 薦擧는 일반 郡民이 官界로 진출하는 거의 유일한 경로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薦擧는 前·後漢을 막론하고 內郡의 주민만을 상대로 하였던 것이다.³⁹⁾ 이러한 방침에 의해 樂浪郡民은 자연 薦擧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樂浪郡내에서는 우대되는 존재이었지만 저들의 정상적인 官界進出은 억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前章에서 소개한 王景같은 인물이 있기는 하다. 그는 樂浪郡 출신 이면서도 비교적 화려한 官歷을 보유할 수 있었다. 後漢書 王景傳에 의하면 그는 侍御史와 刺史를 거쳐 太守에까지 승진하였다.⁴⁰⁾ 樂浪郡 출신으로서 官界에 진출한 인물로는 王景만이 유일하게 확인되지만 그의 官界進出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樂浪郡民에 대한 대우라는 문제와 관련지어 볼 때 그러하다. 官界진출이라는 사실만을 중시할 때 앞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立論도 가능할 것이다. 때문에 王景이 進仕하게 된 경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景少學易 遂廣闡衆書 又好天文術數之事 沈深多伎藝 辟司空伏恭府 時有薦能理水者 顯宗詔與將作謁者王吳共修作浚義渠(後漢書 76-2464)

위의 사료에 의하면 王景의 就官은 辟召(徵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辟召은 「鄉擧里選」의 형태를 지니는 選舉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關連선발제도이다. 이는 被召者의 개인적인 名望 그리고 徵召者와 被召者 쌍방간의 인연을 전제로 하여 실시되었다.⁴¹⁾ 그러니까 選舉가 郡民이라는 일반적 자격을 기준으로 실시된 제도라고 한다면, 辟召은 名望이나 人脈과도 같이 개인이 지닌 특수한 여건에 근거한 제도라고 하겠다. 이점에서 辟召의 例는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본다. 말하자면 王景이 辟召에 의해 官界에 진출했다고 하여 樂浪郡民의 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39) 前漢·後漢 모두 內郡의 주민만을 상대로 薦擧가 실시되었음은 金翰奎, 前揭書 p. 159 참조.

40) 後漢書 76-2464.

41) 上田早苗, 貴族的官制の成立(中國中世史研究 1976) pp. 112~117.

그의 官界진출은 樂浪郡民에 대한 배려때문이 아니라 王景 개인이 지닌 특수한 여건때문이었다.⁴²⁾

樂浪郡의 民은 오히려 外郡에 대한 차별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소외된 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정책 역시 樂浪郡民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리라 보고 본다.

(建武 26年)南單于遣子入侍 奉奏詣闕 於是靈中·五原·朔方·北地·定襄·鴈門上谷·代八郡民歸於本土 遣調者分將施刑補理城郭 發遣邊民在中國者 布還諸縣 皆賜以裝錢 轉輸給食(後漢書 1下-78)

위의 사료중에 보이는 邊民은 樂浪郡民처럼 중국 의곽지역의 郡縣에 거주하는 주민을 가르킨다. 光武帝는 邊民으로서 中國(內郡)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해 本郷으로의 귀환을 명하였다. 귀환하는 邊民에 대해 裝錢(旅費)과 食糧까지 지급하였음을 볼 때 위의 조치는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明帝時에도 光武帝時와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보면⁴³⁾ 邊民의 송환이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邊郡의 주민에 대해 가하여진 기본적인 방침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같은 조치가 내려지게 된 데에는 변경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實邊'의 의미가 컸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위의 조치는 邊民의 주거를 제한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邊民의 지위를 固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 같은 조치로 말미암아 樂浪郡民과도 같은 邊民의 소외는 더욱 심화되었으리라 보고 본다.

그러던 소외된 대상으로서 樂浪郡民의 생활은 어떠하였을까. 다음의 자료는 이들 생활의 한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42) 王景이 辟召에 의해 官界에 진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i) 「多伎藝」나 「能理水」와도 같은 王景 개인의 능력(後漢書 76-2464) ii) 王調의 반란을 진압한 부친 王宏의 공로(同上書) iii) 王景을 徵召한 司空 伏恭과의 琅邪를 중심한 地緣의 가능성(同上書 및 同 79下-2571) 등을 생각할 수 있다.

43) 後漢書 2-109.

① 逸民舍資王君塚

② 舍資逸民王君塚

자료①과 ②는 樂浪 유물로서 黃海道安岳郡安岳邑柳城里에서 출토된 有銘塚의 銘文이다.⁴⁴⁾ ①과 ②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내용으로서, ①·②에 共有된 ‘逸民’이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逸民’은 王氏(王君)자신 혹은 그 주변인물들에 의해 호칭되었을 것이다. 外郡에 대한 차별정책 그리고 樂浪郡民에게 간직되었을 소외의 감정을 생각할 때에 ‘逸民’은 王氏 개인만이 아니라 樂浪郡民 모두에게 共有된 의식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逸民의 조건은 隱居하는 생활이지만 그 중에도 빼놓을 없는 것이 政界와의 단절이다. 後漢書 逸民傳에 수록된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不仕’ ‘辭去’ ‘不起’ ‘不至’ ‘隱閉’ 등의 용어에 의해 政界와의 단절이 표현되고 있다.⁴⁵⁾ 개인의 自意에 의한 ‘不仕’ ‘不起’로서 이것이 逸民 본연의 모습일 것이다. 다 舍資 王氏의 경우는 어떠하였을까. 중국에서의 出仕를 단념하고 樂浪에 隱居하기 위해 來渡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王氏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逸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舍資王氏云云)한 銘文은 내용은 王氏가 樂浪郡에 土着한 인물이었음을 示唆한다. 王氏의 존재를 이제껏 우리가 주목하여 온 ‘民’으로 이해함이 온당하리라고 본다.

이 경우 ‘逸民’이라는 표현은 後漢書 本傳상의 逸民과는 달리 어딘가 空虛한 느낌을 준다. 逸民의 일반적 형태는 自意에 의한 ‘不仕’이며 ‘不起’이어야 한다. 이에 비하면 樂浪郡民들은 일반 경로에 의해 官界進出하는 일이 차단되어 있었다. 舍資 王氏를 포함한 樂浪郡民들의 不仕는 自意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다. 말하자면 소외로 인한 不仕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逸民’은 소외된 생활에 대한 自慰의인 표현이 아니었을까. 樂浪郡의 民은 不仕의 소외된 생활을 自慰하며 自足한다는 입장에서 逸民을 自處하였다고 생각한다.

44) 梅原末治·藤田亮策, 前掲書 p. 57.

45) 後漢書 73-2758~2776.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樂浪郡의 民은 원주민보다 우대되었으나 內郡의 郡民과 비교하여 차별되었고 소외된 생활을 하였다. 소외된 생활은 이들 民으로 하여금 점차 游離된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게끔 하였을 것이다. 더우기 본국으로부터의 徙民에 의한 일종의 新陳代謝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樂浪郡民들은 游離된 집단으로 고정될 수 밖에 없었다. 원주민과는 구분되고 본국과는 游離됨으로 말미암아 이들 집단의 세력약화는 필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桓露之末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三國志 30—851)

위의 사료는 樂浪郡의 民이 弱體化하여감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民多流入韓國」이란 民의 실제적 이동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民이 樂浪郡民으로서의 특성을 상실하고 韓國과도 같은 원주민 세력에 의해 흡수됨을 示唆한다고 보아진다. 또한 遼東人을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할 정도로 民의 자체적 기능이 상실되어 있음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民의 분산과 약화는 본국과 游離됨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그렇지만 樂浪郡의 역사는 좀 더 지속하였다. 韓·濊의 强盛과 民의 弱화가 지적된 桓帝(146—167)·靈帝(167—189)末期로부터 1세기 이상을 존속할 수 있었다. 郡民은 游離된 집단이었는데도 郡이 오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때문일까. 그 이유가 중국의 지속적인 관리에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郡을 관리하는 일은 地方官에 의존해야만 하였을 터인데 樂浪郡의 경우 地方官의 파견은 곧잘 단절되었던 것이다.⁴⁶⁾ 앞의 사료 역시 地方官의 不在를 示唆하고 있다. 논리상 지방관의 不在는

46) 樂浪郡에 대한 지방관의 파견이 용이하지 않았던 시기로는 前漢—新—後漢—魏—晉으로 이어지는 王朝의 交替期和 遼東公孫氏가 樂浪을 비롯하여 東夷諸郡을 장악하던 後漢末~魏初의 시기, 그리고 樂浪郡에서 王調가 반란하던 後漢 光武帝初年の 시기등을 생각할 수 있다.

곧 郡縣체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었다. 그렇지만 樂浪郡은 지방관의 不在에 구애됨이 없이 생명을 연장시켜 나갔다. 그 이유로서는 樂浪郡民의 집단적 형태에 주목해야만 하겠다. 즉, 民은 중국사회에서 소외되고 지방관의 파견 역시 단속적이었지만 民은 집단의 형태를 營爲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民은 慣性화된 住居集團이었던 것이다. 다음의 사료는 이에 대한 좋은 示唆가 되리라고 믿는다.

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 與高句麗王乙弗利相攻 連年不解 樂浪王遵說統帥其民千餘家歸虜 虜爲之置樂浪郡 以統爲太守 遵參軍事(資治通鑑⁴⁷⁾ 88 晉紀 10 孝愍建興元年)

위의 기사는 313년 樂浪郡 최후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樂浪郡의 民들이 본거지를 떠나 遼東의 慕容虜에 귀순함으로써 한반도로부터는 그 모습을 감추었다.⁴⁸⁾ 사료의 내용으로 볼 때 慕容虜에 귀순하기 이전의 樂浪에는 지방관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비록 ‘郡’으로 호칭되고 있지만 사료에 나타난 樂浪의 實相은 郡·縣과도 같은 行政單位로는 보기 어렵다. 행정력이 거세된 주거집단, 즉 慣性화된 주거집단으로 이해된다. 樂浪 최후의 모습이 民의 집단적 이주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도 이를 示唆한다. 313년의 樂浪은 실제로 있어 郡이라는 皇帝의 支配單位로서 보다는 단순한 주거집단으로서 최후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樂浪郡의 수명이 長期化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주거집단으로서의 屬性때문이었다고 본다. 말하자면 樂浪은 郡縣體裁보다는 民에 의존한 주거집단의 형태로서 생명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주거집단의 규모는 樂浪郡 全域에 미치는 광범한 규모는 아니었다. 前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民은 漢人系 주민만을 뜻하는 제한된 범위였으며, 民에 대한 차별로 말미암아 郡의 實體는 郡의 疆域과 상관없이 소규모의 주거집단으로 변모하였을 것

47) 資治通鑑은 宏業書局印行本 新校標點資治通鑑에 의함.

48) 樂浪郡의 民 모두가 遼東으로 이주하지는 않았다. 民의 일부는 현지에 남아 高句麗 또는 百濟에 附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다. 이들 樂浪郡의 民은 郡府를 중심한 小集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집단의 형세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民이 土着化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土着化란 단순히 長期的인 거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소극적일지언정 이들 民에게는 문화적 질층의 흔적이 역력하다. 高常賢墓에서 細形銅劍이 발견되고, 王根墓에서도 非漢式副葬品인 鐵製短劍·細形銅矛 등이 발견되었음은⁴⁹⁾ 이를 증명한다. 民은 원주민에 대해 중국문화를 전달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원주민의 문화를 수용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樂浪郡民의 문화적 입장은 원주민과의 긴장을 줄이는데 공헌하였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民이 집단의 형세를 오랜동안 유지하는데에도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民의 원주민에 대한 타협적 태도는 民의 문화적 입장에서도 나타나지만 다음의 예를 통하여 보면 좀더 분명히 알 수 있다.

- ① 王更娶二女以繼室 一曰禾姬 鶻川人之女也 一曰雉姬 漢人之女也 二女爭寵不相和(三國史記 13 琉璃明王 3年)
- ② 王子好童 游於沃沮 樂浪王崔理 出行因見之 問曰 觀君顏色 非常人 豈非北國神王之子乎 遂同歸以女妻之(同上書 14 大武神王 15年)
- ③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求於我 先是王娶帶方王女寶葉爲夫人 故曰 帶方我舅甥之國 不可不副其請(同上書 24 賁稽王 1)

위의 사료들은 각기 차이 있어 보이지만 원주민系와 漢人系간의 婚姻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또한 원주민系가 漢人系의 여인을娶하고 있음도 일치한다. 사료①의 '漢人之女'는 고구려의 위치로 보아 玄菟郡내의 漢人系 주민일 가능성이 크지만 ②, ③의 '樂浪王女' '帶方王女'는 樂浪(帶方)郡民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民과 원주민과의 타협은 혼인의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民이 집단내의 여인을 원주민에 出嫁시킨 것은 漢代에 宗室 여인을 烏孫에게 出嫁시켰던 일과 흡사하다.⁵⁰⁾ 양편 모두 종족계

49) 町田章, 前掲論文 p. 100.

50) 史記 123-3172.

통을 달리하는 원주민을 회유한다는 것이 혼인의 목적이었겠지만 樂浪郡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더 절박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본다. 즉 民은 본국과 游離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自救策으로서 원주민과의 혼인을 주선하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원주민과의 결혼이 보편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위의 사료들에서 示唆되는 바와 같이 民의 혼인상대는 원주민의 지배층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民이 존속하는 수단인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이상에서 樂浪郡民의 兩面的인 모습에 관해 검토하였다. 즉 民은 樂浪郡내에서는 지배층이었지만, 全 中國사회속에서는 차별되고 소외되는 존재였다. 차별과 소외에도 불구하고 民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존재가 慣性化된 住居集團이었던 때문이며, 土着化된 상태에서 원주민과의 타협이 이루어진 때문이다. 이점에서 樂浪郡의 民은 自足的인 집단이라고 부를만 하다. 民이 집단의 형세를 오랜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自足的 성향때문으로서 樂浪郡의 역사 또한 이러한 民의 존재에 편승하였다고 생각한다.

IV. 結 語

지금까지 樂浪郡의 주민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의 목적은 序頭에서 밝혔듯이 樂浪郡의 역사에 관계된 주민의 역할을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樂浪郡의 성격을 이해하려는 것이었다. 결론삼아 본론에서 얻어진 지식의 대강을 정리하려고 한다.

樂浪郡의 주민은 中족상 漢人系와 원주민系의 두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본고에서는 漢人系 주민에 비중을 두어 검토하였다. 漢人系 주민은 郡縣 설치이후 徙民된 존재가 아니라 이전부터 朝鮮지역에 거주하여 온 亡命人의 후예였다. 저들은 중국적 현실에 불만을 품고 亡命한 사람들이었던 관계로 郡民으로의 變身이 용이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樂浪郡의 초기에는

郡吏를 遼東郡民중에서 취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漢人系 주민들은 곧 郡縣支配에 협력하였으며 이에 의해 民의 자격을 얻었다. 즉, 중국은 樂浪郡에서 漢人系 주민만을 民으로 대우함으로써 종족계통에 따른 차이를 두었다.

이러한 차별에 의거 民은 郡吏職을 담당하는 郡의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이들의 지배적 위치는 地方官職을 대행하기도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의 지배적 위치는 樂浪郡이라는 좁은 공간에 한정된 것이었다. 民의 소속범위를 중국으로 보았을 경우 오히려 저들은 소외되는 존재였다. 이 같은 소외는 중국이 견지한 外郡에 대한 차별과 邊民에 대한 주거제한 조치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政界진출과 신분적 상승이 좌절된 상태속에서 저들은 스스로를 '逸民'이라고 自慰하기도 하였다.

民의 생활은 자연 본국과 遊離된 것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은 民의 약화는 필연적이었다. 그래도 저들이 4세기이상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樂浪郡 설치이전부터 土着化한 주민이었던 때문이다. 즉 民은 郡縣과도 같은 행정체제와는 상관없이 존속할 수 있는 住居集團으로서의 慣性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民이 원주민에게 표명한 타협적 태도 역시 民의 안전에 기여하였다.

한편, 원주민은 郡의 인구로는 파악되었으나 郡의 '民'으로는 대우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郡의 주민으로서 軍役과 租賦의 의무는 부담하였다. 이 점에서 원주민은 순전히 착취의 대상으로도 보이지만 이들에게 귀속된 권한 역시 看過될 수 없다. 원주민의 首長인 渠帥는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원주민의 재래적 질서인 國邑秩序 또한 殘存하였다. 원주민은 郡의 주민이면서 한편으로는 國邑의 구성원이었다. 또한 郡吏에서는 제외되었어도 縣吏職에는 참여하기도 하였다. 원주민에게는 郡縣의 지배와 아울러 재래적인 自律性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郡民의 검토를 통하여 나타나는 樂浪郡은 郡의 원형에서 변질된 존재였다. 樂浪郡은 원래적인 郡縣體制로서 보다는 變形된 郡임으로 해서 더욱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